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에티컬 월) 규제 완화 이영한 변호사, 심상아 변호사

I. 서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이하 총칭하여 "개정법")이 2021. 5. 20.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 유형을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경직 금지 등 차단 대상 및 장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는 규정중심규제(prescriptive rule-based regulation)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금융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방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신축성이 저해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각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통제방식을 설계·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장해온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개정법의 핵심은 ①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 ②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제고, ③ 사후감독의 강화인바,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원칙중심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로의 전환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전 법령에서는 회사 내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규제 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고(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사 외의 경우에도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사 내와 동일·유사한 규제 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법 제45조 제2항).

[표 1]

개정 전 차이니즈 월 규제 내용		
회사 內		
'업무' 기준 차이니즈 월 설치부문 설정	구체적 행위 제한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vs.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설치 기업금융업무 vs.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설치 전담중개업무 vs.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설치 기업금융업무 vs.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행위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 겸직행위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 부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행위 등 	
회사 外		
'업무' 기준 차이니즈 월 설치부문 설정	구체적 행위 제한	
 금융투자업자 vs. 계열회사 간 설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vs.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설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 vs. 외국 금융투자업자 간 설치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행위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을 겸직 또는 판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계열회사 등과 업무 관련 회의/통신시 기록 未유지 또는 준법감시인 未확인 	

그러나 정보교류차단제도의 본래 취지는 회사 내외의 일체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정보 관련 부문간 교류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령 내에 이해상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차이니즈 월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정법은 '업무'가 아니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 정보'(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 등)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금융회사가 그 실정에 맞게 스스로 정하여 탄력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였다. 특히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①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정보의 범위, ②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및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책임소재 등), ③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총괄·집행책임자의 지정·운영,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및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을 정하였다.

[표 2]

개정 후 차이니즈 월 규제 내용 ⁾		
구분	개정 법령 내용	내부통제기준 규정 필요사항
대상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 • 고객자산 매매·운용 정보	교류차단정보 식별·설정방법 고객정보 중 교류허용정보 범위
설치부문	• 삭제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도록 함)	정보별 교류차단 직무·부서·계열회사 범위 교류차단대상 정보별 또는 부서별 책임자 지정
행위제한	• 삭제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도록 함)	 교류차단대상 부문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예외적 교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록 작성·유지 등)
이행·관리	신설 •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임직원 교육 • 임원급 책임자 지정 •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필요시) • 내부통제기준 점검주기, 교육방법 • 내부통제 책임자 권한·책임 관련 사항 • 공시대상 내부통제기준 내용

¹ 출처: 2021. 3. 12.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1 차이니즈 월 제도 운영방향

B.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self-regulation) 제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의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금융회사의 판단에 일임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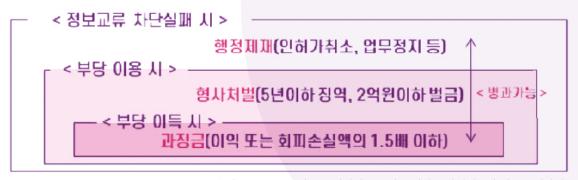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각 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운용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제5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 기준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범위 규정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없는 정보는 제외 가능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부문을 자율적으로 설정	
정보교류통제 관련 전담 조직 설치 등 (제58조, 제59조)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총괄조직 및 담당임원 등 설치 부문별·정보별 책임자 지정 관리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제61조)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규정 업무와 직접적 관련 있는 임직원 외 정보 공유 금지 정보의 활용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한 범위로 한정 직무 관련 없는 자가 교류차단 대상 정보 습득시 지체없이 통지하고 습득한 정보 차단을 위한 의무 및 제한사항 적용 정보교류차단 준수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제62조)	• 물리적 공간 분리, 정보시스템 분리,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회사가 자율적·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 차단	
예외적 교류 절차 (제60조, 제63조, 제64조)	업무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예외적 교류를 허용하되, 정보교류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 등 승인, 기록 유지 등 정보교류(Wall Cross)의 절차 규정 임원의 회사 업무 통할(above the wall) 및 이해상충 우려 크지 않은 후선업무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 정보 교류 허용	
거래주의·제한 목록 지정 (제65조)	•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거래주의(watch list) 및 거래제한(restricted list) 증권 목록 지정의무 규정	
이해상충 우려 거래 (제66조)	• 회사별 이해상충 우려 높은 거래 유형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규정	
계열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 (제67조)	원칙적으로 사내정보교류 차단규제를 준용하여 정보차단벽 설치하되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 겸직 허용 (제62조, 제70조)	 사내의 경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및 예외적 교류 절차에 따라 임직원 겸직 허용 사외의 경우에도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겸직 허용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공개 (제72조, 제73조)	 정보교류차단 관련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주기적 실시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 공개 	

C. 사후감독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였거나 정보를 부당 이용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거운 제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28조 제4항, 제444조 제6의2호).



(출처: 2021. 3. 12.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1.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다만, 임직원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감독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3항).

III. 결론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를 목표로 하였던 금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물리적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조직 규모, 외국 규제와 국내 규제 사이의 간극, 계열사간 정보교류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규제 완화의 반대급부로 각 회사는 정보교류행위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 방식이 원칙중심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회사에 대한 사후감독 방식 역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감독목적상 필요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즉, 회사 실정에 맞추어 투명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정보교류행위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등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정보교류행위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1 Dentons. Dentons is a global legal practice providing client services worldwide through its member firms and affiliates.

This publication is not designed to provide legal or other advice and you should not take, or refrain from taking, action based on its content. Please see dentons.com for Legal Notices.